

[별표 2] 전문가 직접인건비 지급기준
 <개정 2018.11.30.>

전문가 직접인건비 지급기준(제8조 관련)

(1일 지급액, 단위: 원)

구 분	1 급	2 급	3 급	4 급	5급
지 급 액	370,000	300,000	240,000	200,000	140,000

- ※ 30일 이상 파견자는 파견일수÷30×22로 환산한 값을 기준으로 지급
- ※ 지급기준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술자 노임단가의 부문별(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 산술평균값으로 3년마다 갱신하되, 천원 단위는 버림하며, 급수별 환산표는 아래와 같다.

KOICA 등급	엔지니어링 기술등급
1급	기술사
2급	특급기술자
3급	고급기술자
4급	중급기술자
5급	초급숙련기술자

[별표 3] 특수지 가산금 지급 기준<신설 2018.11.30.>

특수지 가산금 지급 기준

구분	지급대상 국가	적용 요율
특수지 '가'군	KOICA 해외사무소 특수지근무수당 “가” 지역 국가	15%
특수지 '나'군	KOICA 해외사무소 특수지근무수당 “나” 지역 국가	10%
특수지 '다'군	KOICA 해외사무소 특수지근무수당 “다” 지역 국가	5%

※ 상기 적용 요율을 해외투입 직접인건비에 곱하여 특수지 활동수당 산출

【참고】 특수지 가산금 지역별 구분표 (2018.11.23. KOICA 해외사무소 운영세칙 중 발췌)

구분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아주	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 카라치), 동티모르,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몽골, 파푸아뉴기니, 네팔, 솔로몬군도	캄보디아, 피지, 스리랑카, 라오스, 미얀마
미주	볼리비아, 아이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파라과이, 자메이카, 페루,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유럽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이르쿠츠크, 유주노, 사할린스크)	러시아연방(블라디보스톡),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중동	이라크, 예멘, 수단	알제리, 리비아, 팔레스타인	이란,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아부자, 라고스), 앙골라,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짐바브웨, 가나, 가봉, 세네갈,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카메룬, 우간다, 르완다, 모잠비크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 상기 구분표에 누락된 국가 중 특수지 가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가는 가장 인접한 재외공관의 특수지 등급을 적용할 수 있음

[별표 4] 전문가 체재비 기준

<신설 2011.08.11., 2013.08.14., 2015.09.23.>

전문가 체재비 기준

1. 직급과 지역에 따른 단가

(단위 : US\$)

직급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계
1-2 급	가	35	190	107	332
	나	35	136	78	249
	다	35	111	58	204
	라	35	72	49	156
3-4 급	가	30	150	81	261
	나	30	116	59	205
	다	30	90	44	164
	라	30	69	37	136
5급	가	26	132	67	225
	나	26	105	49	180
	다	26	77	37	140
	라	26	65	30	121

2. 지역별 등급 구분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

구분	지역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등급	아시아주.대양주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등급	아시아주.대양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스공화국, 타이,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등급	아시아주.대양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남.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 및 도시는 목적지에서 위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